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심 사 보 고

1993. 12. 1.

기획경제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 년 11 월 17 일

○ 회부일자 : 1993 년 11 월 17 일

다. 상정일자

○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93. 12. 1.)상정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담당관 이 종 배)

가. 제안이유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액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함

나. 주요골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동 조례에 월정액(예. 월 100,000이하의)으로 명시하던 것을 삭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안 창 국)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사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업무수행 및 행정심판등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 개업중인 변호사중 2인이내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변동될때마다 본조례를 개정해야되는 실정인바, 현행조례 제6조의 수당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조례개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무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져 하는 것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문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대로 가결 (참석 8, 찬성 8)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